

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

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주요 변경내용

Ⅲ 응시자격

마. 자격(면허) 및 경력제한

- (경력경쟁채용시험)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

【 변경 전 】

채용분야	응시자격 및 경력제한	
예 방 (지방소방사)	❖ 예방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소방관련 업체에서 당해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
	▶ 예방관련 자격증 ▶ 소방관련 업체	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산업)기사(전기분야)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시설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
건 축 (지방소방사)	❖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
	▶ 건축 관련 자격증	기술사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
		기능장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
		기 사 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
		산업기사 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실내건축
▶ 건축분야 인정범위("붙임 9" 참조)		
①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) 관련 [별표1]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"2. 건축공사업", "3. 토목건축공사업"에서 근무한 경력 ② 「건축사법」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[별표 5]에서 전문분야 항목 "설계·사업관리"에서 "일반"과 설계등용역 중 "설계등용역일반"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		

【 변경 후 】

채용분야	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									
예 방 (지방소방사)	<p>❖ 예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padding: 5px;">▶ 예방관련 자격증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산업)기사(전기분야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▶ 예방분야 인정범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①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시설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방관련 업체 근무경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“소방분야”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(보조) 근무경력</td> </tr> </table>	▶ 예방관련 자격증	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산업)기사(전기분야)	▶ 예방분야 인정범위		①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시설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방관련 업체 근무경력		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“소방분야”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(보조) 근무경력		
▶ 예방관련 자격증	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산업)기사(전기분야)									
▶ 예방분야 인정범위										
① 소방시설공사업, 소방시설설계업, 소방시설감리업,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방관련 업체 근무경력										
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“소방분야”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(보조) 근무경력										
건 축 (지방소방사)	<p>❖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width: 20%; padding: 5px;">▶ 건축 관련 자격증</td> <td style="width: 15%; padding: 5px;">기술사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기능장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기 사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산업기사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실내건축</td> </tr> </table> <p>▶ 건축분야 인정범위 ①~③은 (“붙임 9” 참조)</p> <p>①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) 관련 [별표1]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“2. 건축공사업”, “3. 토목건축공사업”에서 근무한 경력</p> <p>② 「건축사법」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</p> <p>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[별표 5]에서 전문분야 항목 “설계·사업관리”에서 “일반”과 설계등용역 중 “설계등용역일반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</p> <p>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</p> <p>⑤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“건축분야”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(보조) 근무경력</p>	▶ 건축 관련 자격증	기술사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	기능장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	기 사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	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실내건축
▶ 건축 관련 자격증	기술사	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							
	기능장	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							
	기 사	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							
	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실내건축								

2. 기타사항

- 위 변경 공고 이외의 내용은 「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 (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-301호, 2018. 2. 12.)와 동일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학교 교육기획과(☎032-930-5927~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